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2/ 5 통권 171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지속경영을 위한 Good Governance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나
-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
-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합니다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해외물품의 단순 구매대행 사업자라면, 총액 아니고 대행수수료만 공급가액에 해당 (p.13)

#### 〈스마트폰과 AI로 인한 변화무쌍 소비시대의 마케팅〉

개념구분	전통적(물리적)소비시대	액체적(liquid) 소비시대
소유·공유	장기간 소유, 소유권 기반	단기공유, 유행민감, 불만시 교체
소비자 취향	지속·안정적 성향	시시각각 변화, 휘발성 소비 특성
상품특성	대중적 취향의 소품종 대량생산	세분화된 취향대로 다품종 소량
소비지향	소비균형 (소득수준별 소비)	소비 양극화 (지가 생활품 + 고가 사치품)
소비경제성	가격대비 만족 (가성비 중시)	시간대비 효용 (시성비 중시)
소비시장	중간가격대 중심	초저가와 초고가로 양분화
지불방법	일시불 현금결제 완료	구독경제(할부·렌탈 등), 지불수단 다양
소비자 만족	물리적·신체적 만족 중심	정신적 Wellness, 맞춤형 건강기능
기술영향	하드웨어적 생산시설, 기계 등	AI(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운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13호 / 주간 6호

2025. 2. 5.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스마트폰과 시로 인한 변화무쌍 소비시대의 마케팅	표지
CEO의 경영산책	지속경영을 위한 Good Governance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반려동물 관련 비용 회계처리 & 세무처리 문의 - 과년도 비용 손금산입 여부 - 설계변경으로 금형 폐기 문의 -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부가세가 있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소득세 과세표준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9 10
직장인 Survival	따로 장소를 만들어 면담하자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 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 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 액에 해당함 (사전법규부가-235, 2024.06.17) - 총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 금불산입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총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 금산입(△유보)함 (사전법규법인-866, 2024.04.02)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재난피해 납세자 등에 납부유예, 최장 2년까지 지원	14
마케팅 Tax consulting		13
세무정보	-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	15
회계정보	-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합니다	3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11

# 지속경영을 위한 Good Governance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국가 거버넌스는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원을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으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법치와 규범 준수, 자원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 정부의 책임성과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재의 탄핵 국면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거버넌스 실패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거버넌스가 실패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워지고,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 인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사라지며, 법치와 규범이 붕괴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져 결국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금융시장 불안정, 외국인 투자 감소, 규제 정책의 변화 등의 요인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CEO를 비롯한 기업 관리자의 거버넌스에 대한 통찰적 이해와 적용이 중요하다.

## 거버넌스의 배경과 개념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세계화와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확산, 그리고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의 한계로 인한 국가기능의 변화로 보고 있다. 즉 국민국가의 중심의 통치가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됨에 따라, 국가의 통치 대상이었던 기업과 시민 등 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발전과 자각은 국가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켰다. 1980년대에는 대처와 레이건의 집권으로 본격화된 시장 제일주의 사고의 확산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조직화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출현과 공정경쟁, 환경보호, 인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현안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이 거버넌스의 논쟁과 발전을 가져왔다\*.

\*최성욱, 한국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 관점에서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 학회보 제10권 (2003년 겨울), pp. 112 -113

거버넌스는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제나 제도, 메커니즘 및 운영방식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등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제에 바탕을 둔 접근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일반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 거버넌스의 변화

기존의 정부 중심의 위계구조 또는 조정 방식에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면서 주목받게 된 거버넌스는 1990년대에 들어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되기 시작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 형성을 포함하는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특성이 강조되었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인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여 ‘정부주도’와 ‘시장주도’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치 및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통치 또는 관리체제로는 해결이 힘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 기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거버넌스는 시대적 상황과 요구의 변화에 따라 개념 자체가 변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기대 수준들이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어 왔다. 1970년대에는 정부와 같은 의미로서 거버넌스가 이해되며 국가적 수준의 관리능력이 주요 관심이었다. 1980년대에는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이 초점이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파트너십이 강조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합의형성 등 거버넌스의 민주적 특성이 강조되며 NGO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확산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는 새로운 문제 (예: 환경)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해결 기제로서 거버넌스가 인식 활용되고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표 1> 거버넌스 개념의 변천 과정과 같다.

<표 1> 거버넌스 개념의 변천과정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government)와 같은 의미로서 거버넌스를 이해</li> <li>- 국가적 수준에서의 관리능력에 대한 관심</li> <li>-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관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li> <li>- 국가차원의 사회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li> <li>-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합의형성 등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특성 강조</li> <li>- NGO의 역할에 대한 인식</li> <li>- 새로운 제도와 기능 및 과정의 개발 필요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 기제로 주목</li> <li>-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강조(환경거버넌스, 녹색거버넌스)</li> </ul>

자료: 최성욱, 한국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 관점에서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 학회보 제10권 (2003년 겨울), pp. 112

### 거버넌스의 철학 : 민주적인 협의나 합의

그리스어 ‘kubernao(배를 조종하다)’에서 나온 거버넌스란 단어에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가치 구현’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거버넌스를 복종, 다스림, 강제, 명령 등과 같은 상명하달이나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조직 내의 민주적인 협의나 합의가 중요함을 함의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거버넌스는 존재할까? 정치철학자인 W.B.갤리는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개념이며, 민주주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고 계속 이의가 제기되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한 일치된 정의란 없다”. 최선의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이 있을 뿐이다. 거버넌스도 결국 ‘완벽한 거버넌스’는 없는 반면, ‘좋은 거버넌스’를 향한 부단한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저희 안세회계법인은 2025년 새해 우리 사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축 운영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 >

##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법적 보관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세법으로 규정하는 기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특정해서 일정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세법 규정 이외에 상법 제33조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대한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에 맞춰 10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 반려동물 관련 비용 회계처리 & 세무처리 문의

**Q** 당사 지방공장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습니다(자산 처리는 안되어있고, 타사에서 무상으로 제공 받은 대형견)  
그간 사료 구입 등 소액의 비용만 발생하여 복리후생 처리하였으나,  
얼마전부터 강아지가 아파 수술 등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A** 반려동물 치료비 등은 복리후생비보다는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과년도 비용 손금산입 여부

**Q** 과년도 외국납부세액 및 선납법인세를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및 잡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2019년도 외국납부세액(원천징수)
2. 2019년도 중간예납세액
3. 2022년도 중간예납세액, 기납부세액(이자소득세)

-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기간 (10년)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법인세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금형 폐기 문의

**Q** 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카메라에 납품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금형을 제작업체에 의뢰하고 금형제작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카메라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해당금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금형제작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질문인 즉, 금형실패 또는 폐기하는 비용이 아니었다면 금형매출로 인식을 했을텐데 이 경우 폐기금형의 제작비용 회수를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금형대 회수금-금형대 제작비용의 차는 잡수입으로 계상하면 될런지 아니면 금형매출로 봐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A** 금형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금형제작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는 매출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부가세가 있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Q**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홈텍스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니 면세사업자라고 확인되는데,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A**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써 납세자가 스스로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잘못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과소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며, 과다신고의 경우는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수정신고는 과소신고된 세액을 정정신고하는 것이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때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정상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등 오류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까지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수정신고를 하는 시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50%, 6개월 초과후부터 1년내는 30%, 1년초과 1년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내에 수정신고시는 10%의 신고불성실(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가산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경정(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단순히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절차만을 준용하고 있어, 대리납부의 불이행은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조세 22601 - 377, 85. 3. 27, 부가 22601 - 1730, 88. 9. 28)

수정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일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한 후 국기법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도 함께 기재하

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감액경정청구는 세금과다 납부시 세무서에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감액경정청구는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과다(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이러한 감액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년이라는 기한은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관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액경정하여 추징하겠지만 과다신고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감액경정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

민약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를 못한 경우(무신고자)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세신고서 등의 작성요령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기한후 신고이므로 가산세와 납부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된다.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 0.5%'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30%, 3개월 초과 6개월내에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는 20%의 가산세가 경감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다단계 기본세율	기본세율(차감속산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15%) - 126만원
5,000만원~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24%) - 576만원
8,800만원~1.5억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35%) - 1,544만원
1.5억원~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38%) - 1,994만원
3억원~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40%) - 2,594만원
5억원~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45%) - 6,594만원

### 화

#### 매년 미리 챙겨둬야 할 세테크 상품

상품	혜택	비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원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
IRP	세액공제 900만원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900만원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투자 손실 시 과세되지 않음. 납입액 내년 이연 가능
주택청약저축	납부액 40%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임직원 할인혜택 세부사항 규정

- 비과세 금액: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 시가 기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
- 재판매 금지기간: 자동차·대형가전·명품 등 2년, 그 외 1년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공제범위: 시설이용료만 인정  
(운동강습비·회원권 비용 등은 제외)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 추가

###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5% → 3.5%(100만원 한도) \* 6월 30일까지 적용

### 개인투자용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이자소득 분리과세: 10년물 이상 → 5년물 이상



##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시행 시기	주요 내용
1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5천만원 이하로 확대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혜택
2월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
6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 가능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연내	주택드림대출 출시
	아파트 공시가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



## 따로 장소를 만들어 면담하자

시즈오카현 이와타시에 있는 아이테크는 경량수지를 가공하는 ‘브로 성형’이라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스즈키와 도요타 등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다.

아이테크의 나카지마 쿠니오 사장은 관리직과의 면담을 월 1회, 30분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회사에서는 ‘몇 월 며칠에 실시할 것인가’라는 연간스케줄까지 짜놓고 있다.

아이테크에서는 사장의 의자와 간부의 의자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깝게 붙어서 일하고 있어도 ‘복잡한 이야기’나 ‘조금 궁금한 것’, ‘말할까 말까 고민되는 것’ 등은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다. 또 일부러 사장 자리로 가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매월 면담을 실시하다 보면 형식을 차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쉬워진다. 직원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 불만을 쌓아두지 않아도 되고, 사장은 현장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17일 (금)	1월 20일 (월)	1월 21일 (화)	1월 22일 (수)	1월 23일 (목)
미 달 러 (USD)	1454.70	1455.80	1453.00	1437.90	1434.30
일 본 엔 (JPY)	937.25	931.26	934.59	923.18	916.84
영 국 파 운 드 (GBP)	1779.75	1771.71	1792.13	1773.79	1765.70
캐 나 다 달 러 (CAD)	1010.21	1005.35	1016.01	1002.51	996.28
홍 콩 달 러 (HKD)	186.79	187.01	186.75	184.69	184.17
중 국 원 (CNH)	198.26	198.29	198.01	197.56	197.14
유 로 화 (EUR)	1498.70	1495.62	1514.46	1496.21	1492.75
호 주 달 러 (AUD)	903.28	901.94	911.90	900.27	899.02
싱 가 폴 달 러 (SGD)	1064.12	1064.03	1072.17	1061.77	1058.0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3.09	323.08	323.39	321.28	323.30

# 최신판례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해외물품의 단순 구매대행 사업자라면, 총액 아니고 대행수수료만 공급가액에 해당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함

사전법규부가-235, 2024.06.17

### 질 의

-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 회 신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서면법규법인-1617, 2024.08.30

### 질 의

- 질의법인은 신탁업 영위 법인으로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계약마다 금전, 금융자산, 부동산 등 다양한 신탁재산이 존재함
- 「법인세법」은 신탁소득을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위탁자 과세방식과 신탁재산 과세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의미
  - 1안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 2안 신탁계약에 속한 각각의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각각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 회 신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총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총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사전법규법인-866, 2024.04.02

질 의

-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총당부채, 이연수익 및 SAT 조정 자산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양수법인의 세무조정 방법

회 신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총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을 제공함에 따른 이연수익'은 그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및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총당부채 및 이연수익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회계상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매출채권에 대응하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유보)하며 동 차액(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말함)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 매출채권 관련) 및 손금산입(△유보, 재고자산 관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기준법규부가-81, 2024.06.26

질 의

- (주)\*\*\*\*\*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카지노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카지노 고객유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업체(이하 "쟁점모집업체")에
  - 외국인 고객 모집 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 쟁점용역은 국외의 경제력 있는 고객을 모집하여 자문대상법인의 카지노에 방문하도록 추천하는 것이고,
  - 위탁수수료는 쟁점모집업체가 모집한 외국인 고객의 자문대상법인 카지노 게임 결과에 비례하여 정해짐

질의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판단 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인지, 용역이 사용 소비된 장소인지 여부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재난피해 납세자 등에 납부유예, 최장 2년까지 지원

국세청이 재난피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2년까지 납부연장·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무안공항 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세정지원 통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 '장애인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부터 한도없이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지만,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강민수)은 21일 연말정산 관련 장애인 세액공제 주요사안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장정보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이며, 일반 보장정보보험료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받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 분만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가운데 바우처 결제를 통해 본인이 부담한 돈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장애

인활동지원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이며,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회사에 내면 된다.

장애인인 직계존속 등을 위해 특수교육비를 썼다면, 이 역시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201만 사업자, 건보 보수총액 신고 면제... 사립학교 등 일부는 제외

국세청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한 201만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정창 강민수)은 지난 16일 건보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추가로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은 2024년 소득부터 국세청에 접수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

- 기획재정부, 2025. 1

## I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 기본 방향 >

- ◇ '24년 국회통과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 ◇ 경제의 역동성 지원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 중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
-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및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
-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 2. 민생경제 회복

-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범위 구체화
-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및 주류 관련 제도 개선



### 3. 조세체계 합리화

- ▶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구체화
-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 ▶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대한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 ▶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 II

## 주요 개정 내용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신설
  - \* (반도체)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추가

세부 기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 전력관리반도체(PMIC)추가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 제조 기술 → UWB(ultra wide band)추가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 → HDR(high dynamic range)추가
바이오	바이오향약품 소재 기술 → Buffer 소재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 신설
  - \* (수소)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에너지효율·수송)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 확대

세부 기술	
첨단 소부장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 제조기술 범위 구체화(확대)
	첨단 터닝센터 설계, 제조기술 범위 구체화(확대)
탄소중립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확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 ※ ❶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6.26.)에서 발표
- 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4.5.1.)에서 발표
- ❶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 ❷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❸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예: 강사료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령)

- ※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24.9.27.)에서 발표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 글로벌 Top100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등 감면기간 확대 (조특령)

-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
  - \* (현행) 5년 100% 감면 + 1년 연장 가능 → (개정) 5년 100% 감면 + 2년 연장 가능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업종 확대 (조특령)

-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24.12.18.)에서 일부 발표
-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정\* 예외사유 확대 (조특령)

- \* 3년 이내 출자·투자지분을 이전·회수하는 경우 등 소득공제 추정
- 벤처투자 선순환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 시 소득공제(투자액의 30-100%) 추정 예외사유 확대\*
  - \* (현행) 투자자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개정) 개인투자조합이 일정기간(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및 일정 요건(예: 투자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충족하여 해산하는 경우 추가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 (조특령)

- \* 통합고용 공제액(중소/중견/대, 만원): (기본)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
  - ↳ 우대대상: 청년 정규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종부령)**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 1채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 등) 적용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법률(조특법§71의2) 개정내용 〉

- ◇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소재지, 주택가액 요건 등은 시행령 위임

-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수도권·광역시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 (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 \*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 기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98의9) 개정내용 〉

- ◇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구체적인 주택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전용면적 85m<sup>2</sup>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

##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확대 (상증령)

-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계\* 추가
  - \*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 (상증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및 개인비사업용토지 제외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104의10) 개정내용〉

- ◇ 국적선박 확충 유도를 위해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등)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운항일 이익 차등 적용 근거 마련 및 일몰 5년 연장
  - 운항일 이익 수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 기준선박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0~25,000톤	7원	9.1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법률(조특법 §47) 개정내용〉

-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 규정 신설
  -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 이연된 양도세 납부방식, 신청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계산방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양도 또는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세 산출
  -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상속, 허위·부정 발행 등
- (납부시기)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
- (신청방법)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과세이연신청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령)

- ※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24.10.2.)에서 발표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 (대상 확대) 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요건 완화
  - \* (현행) 주식인수 후에도 기존 지배주주가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세액공제 배제 → (개정)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더라도 지분비율 20% 이하 보유 시 세액공제 적용
- (평가방식 조정) 객관적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방식 일원화
  - \* (현행)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술가치 또는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의 120%)] → (개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술가치

3) 자본시장 활성화

□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특령)

-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10년물 → 5년물 이상)
  - \*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분리과세(14%) 적용

### □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소득령)

- 적격 집합투자기구(연 1회이상 결산·분배 의무) 중 TR\*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 조정(이자·배당 제외)
  - \* 보유기간 중 이자·배당수익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양도시 보유기간 총수익누계액(total return)을 분배하는 방식
-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기초자산 주식 비과세)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 가능
  - ※ '25.7.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소득법 §17) 개정내용〉

- ◇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 적용시기 :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조각투자상품의 구체적 범위, 이익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조각투자상품 범위)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
- (조각투자상품 이익)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거래(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는 공제

###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법인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 REITs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
-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 상장리츠와 유사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2 민생경제 회복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 법률(소득법§12(3)마) 개정내용 〉

- ◇ 근로자등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 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
  -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및 최대 지급횟수 적용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 (비과세 제외) 개인사업자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법인의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지급횟수 기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
  - \* 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음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 연장\* (조특령)

\*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지급시 5년간 발생한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후 소득세 납부고지

-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기간 연장(5년→10년)

###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 법률(조특법§126의2) 개정내용 〉

- ◇ 체육시설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30%)하고, 체육시설 이용료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대상시설)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공제범위) 시설이용료\*만 인정

\* 운동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개소령)**

-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5년 상반기(1.3.~6.30.) 한시 인하(5% → 3.5%, 100만원 한도)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 ※ ①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①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
- ② 콩나물재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주세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 확대

	현 행	개 정
경감대상 제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500kl, 증류주 250kl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1,000kl, 증류주 500kl 이하</li> </ul>
경감한도 및 경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주) 200kl 이하 : 50%</li> <li>▪ (증류주) 100kl 이하 :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주) 200kl 이하 : 50%</li> <li>▪ 200-400kl : 30%</li> <li>▪ (증류주) 100kl 이하 : 50%</li> <li>▪ 100-200kl : 30%</li> </ul>

## □ 주류 관련 제도 개선 (주세령·주류면허령)

※ ❶「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 및 ❷❸「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❶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납세병마개 관련 제도개선\*\* 등 주류제조 관련 규제 완화

\* (현행)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 → (개정)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추가

\*\* (현행)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 운용 → (개정) 등록제로 전환

### ❷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 확대(연 2%→4%)

\* 주류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 ❸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참고면적 기준 완화(66㎡→22㎡)

## 3 조세체계 합리화

###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 법률(소득법12(3)차) 개정내용 〉

◇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원등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화

- 자기소비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재판매 금지기간 및 금액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시가의 판단기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

\* 파손·변질·유효기간 도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시가로 판단 가능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별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

○ (재판매 금지기간)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소득령)

- \*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26.1.1. 시행)

### □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가\*를 배제하는 기한을 '25.5.9.에서 '26.5.9.까지로 1년 연장
- \* 증가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 □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

-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
-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80%) 적용 기준

### □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 법률(소득법§37) 개정내용 〉

- ◇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
  - \*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
  - 실제 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및 구체적 의제비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
-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

###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소득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 (법인령)

- 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한 과세 범위\* 합리화
  - \* (현행)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처분수입 과세 제외 → (개정)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사용한 자산 처분시 처분수입 중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 제외(현행 방식도 적용 가능)

###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령·법인령·종부령)

-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5.6월 도입)
  - 건설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매입형: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 상향(공시가격 6→9억원, 법인은 현행 9억원)
  - \*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 상향\*
  - \* [건설형]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개정) 12억원 이하
  - [매입형]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9억원 이하(비수도권 6억원 이하)

### □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 (개소령)

-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열량에 따른 차등세율 과세방식을 단일세율로 전환('25.7.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 (현행) 고열량탄 49원/kg, 중열량탄 46원/kg, 저열량탄 43원/kg → (개정) 46원/kg

###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조특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

- 법인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 (요건: ①+②+③)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2)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소득과약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 (138→142개 업종, '26.1.1. 시행)
  - \* ①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조정 (조특령)

- \* 중소기업(농어업·제조업·도매업 등) 취업자에 대해 3~5년간 70~90% 소득세 감면
-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
  - \*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106의11 신설) 개정내용 〉

◇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 송객용역의 정의,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입금 기한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송객용역 정의)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 홍보, 관광객 모집·안내 또는 기타 편의 제공 행위
- (부가가치세 입금 기한) 송객 후 7일 이내

### AEO 업체 대상 과태료 감경혜택 폐지 (관세령)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 폐지
  -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 이력, 물류안전 관리 등을 공인한 업체로서 신속통관·조사면제·과태료 감경 등 혜택 제공 중

###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합리화 (법인령)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연한(5년)을 감안하여 인건비 제한(총급여 8천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합리화\*
  - \* (현행)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
  - (개정) 현행 또는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국기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 (건당 한도) 50만원 → 25만원 / (인당 연간 한도) 200만원 → 100만원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구체화 (소득령·법인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소득법 §160의3, 법인법§112의2) 개정내용〉

- ◇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 다음 연도 1.10.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 3억원으로 규정

#### □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소득령)

- \* 무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적용
- \* (현행)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소득령·법인령)

-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 간소화\* 및 거래보유명세서 제출방법\*\* 개선
- \* (현행) 사모펀드는 하위투자자별로 제출 → (개정) 공모·사모 모두 펀드별로 제출
- \*\* (현행) 사전 제출 → (개정) 사후 확인(세무서장 요청시 제출)

#### □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개선 (관세령)

- 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 완화
- \* (현행)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1년 범위 내 일괄 가격신고 가능 → (개정) '같은 물품' 삭제
- 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명확화\*
- \*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2) 납세자 권익 보호

#### □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국조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금융정보 제공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 (해외금융계좌 신고) 10%~20% 누진율, 20억원 한도 → 10% 단일율, 10억원 한도  
(금융정보 제공) 금융기관별 2천만원/1천만원 → 계좌별 30만원/10만원, 한도는 동일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국징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자 추가
- \* (현행)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 →  
(개정)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 추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국징령, 관세령)

-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관세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
- \* ①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5천만원 이상 체납(현행과 동일)  
②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출국 3회 판단 기준 변경  
(현행) 체납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만 포함 →  
(개정) 체납금액 기준 삭제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 (관세령)

〈 법률(관세법 §111) 개정내용 〉

- ◇ 관세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 법률에 열거중인 사유(관세탈루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와 유사한 사유
-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추가

#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합니다

- 금융위원회, 2025. 1

-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 가능
  - 지배구조·내부회계관리 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독립성 및 감사품질 향상 등 회계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유도
  
- ◇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 공개
  -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T/F」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기준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구체화·정량화하고 「절대평가」 방식 적용
  
- ◇ '25.1분기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평가 및 유예대상 결정
  - 주기적 지정 원점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신청 받아 운영할 계획

12.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방침을 발표한 후, 금감원과 함께 회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24.5월~)하여 세부

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자본연,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학계

### < 추진배경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이나,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관련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게 되었다.

※ 이러한 정책방향은 도입당시(‘17.10월) 국회 정무위 논의나 감사원 지적(‘23.3월)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

### < 우수기업 평가·선정 절차 >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 예정

### < 신청대상 >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이다.

\* ‘24년 현재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 중 총 749개사가 감사위원회 설치

\*\* 지정유예 신청이 개시되는 ‘25년까지 상장사 중 약 79% 이상이 지정감사 1년 이상 수감 예상  
결격사유는 크게 두가지(①관련 법령위반, ②회계신뢰성 결여)로 구성된다. 우선,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 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이나, 재무제표 재작성 금액이 중요성 금액(예, 자산매출 평균의 1%) 미만인 해당하는 등 경미한 경우 제외

### < 우수기업 평가기준 >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 지표들로 선정하였다. T/F 논의과정에서 회계업계와 기업계의 의견을 조정·반영하는 한편, 해외사례,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검토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선별했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고 전문가마다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우선 고려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하는 한편,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1,000점 만점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다.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예: 감사위원 임기 보장 필요성 등)에 정관이나 내규 반영, 협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한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기준은 붙임자료 5~11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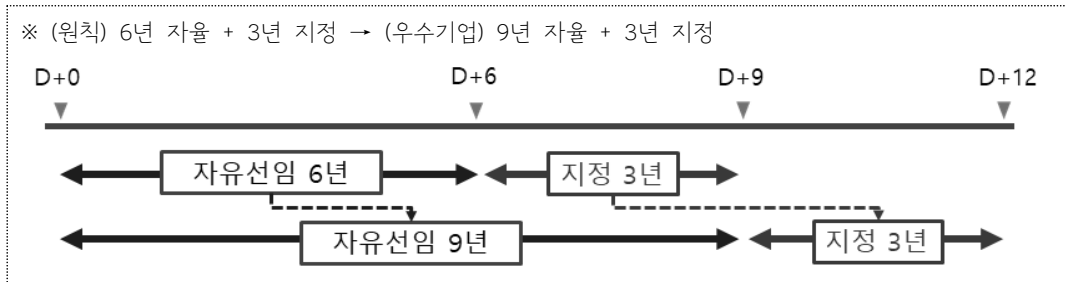
다양한 가점 항목도 포함되었다. 내년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거래소) 기업을 비롯하여,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외부포상·표창을 받았더라도 회계부정 우려가 크거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예: 지배구조 평가 하위 50% 수준) 가점부여에서 제외된다.

< 지정 유예효과 >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 사례별 지정유예 효과 : [붙임] 참조

< 감사인 지정 유예 효과 >



다만,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 개시 이전은 물론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조치를 즉시 취소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일 공개한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25년 6~7월(잠정)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25년 3분기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 '25년 1~2월중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도 의견수렴 예정

정부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다. ('23.6월,「회계제도 보완방안」)

T/F에서는 '20년도에 주기적 지정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들이 '29년부터 다시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점, 법·제도 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7년중에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안)

### I 추진방향

- (정책목표) 기업의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 제고 → 근본적 회계투명성 제고
  - 주기적 지정제도는 감사인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이나, 예외 없는 일률적 적용에 대한 비판 제기
  - 이에 따라,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도록 제도 보완
- (기본원칙)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 (3년)로 추진
  - \* 모든 상장기업이 1회이상 지정되는 ‘28년까지 유지
- (유예규모)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우수기업 선정 → 기업의 개선의지·노력에 따라 유예규모 변동
- (일정) [‘25.1분기] 평가위원회 구성 → [’25.6~7월] 유예신청 접수 → [‘25.3분기] 평가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 [’26년~] 유예적용
  - \* 외감법령 개정안 마련(’25.1분기) → 법령 개정 및 시행(2분기)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추가 반영 검토
  - 원점재검토 전까지 3년간 지정유예 신청 및 유예대상을 선정하고, 제도개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운영
- (원점재검토) ‘27년부터 원점 재검토 준비에 착수 → ’28년 재검토 결과에 따른 법·제도 개선 추진
  - 주기적 지정제 도입후 최초 지정받은(’20년 지정) 기업이 ‘29년부터 재지정을 받는 점, 법·제도개선 소요기간 등 감안
- (밸류업 관련)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다만,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 등은 가점부여 시 제외

## II 평가 및 유예방식

### □ (신청대상) 주기적 지정 대상인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 \* '24년 현재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중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총 749개사(아래 ① 유형 : 199개사, ②유형 : 475개사, ③유형 : 75개사)

#### ※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 ①(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 ②(자산 1천억~2조원 상장사) 상근감사 설치가 원칙이나, 감사위원회\* 설치로 갈음가능
- ③(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비상근감사 가능하나, 감사위원회 설치도 선택 가능

-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요건(분리선출, 회계·재무전문가 등) 모두 만족 필요

- 다만, 신외감법 시행('18년) 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등을 통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로 한정  
( '25년말 현재 지정감사를 1년이상 받게되는 회사도 포함)

- \* 지정유예 신청이 개시될 '25년에는 상장회사 중 약 79%가 1년 이상 지정감사 예상

### □ (평가주체) 민간위원 중심으로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주관)·ESG기준원(협조) 평가실무 지원

- \*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회계학회,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7인)

### □ (평가절차) 결격사유 자체판단후 신청 → 평가 → 유예 결정

- ① (신청) 회사가 결격사유 판단후 확인서·증빙과 함께 유예신청
- ② (평가) 실무 지원기관이 실무안 마련 후, 평가위원회가 최종 평가
- ③ (유예) 증선위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예대상 회사 최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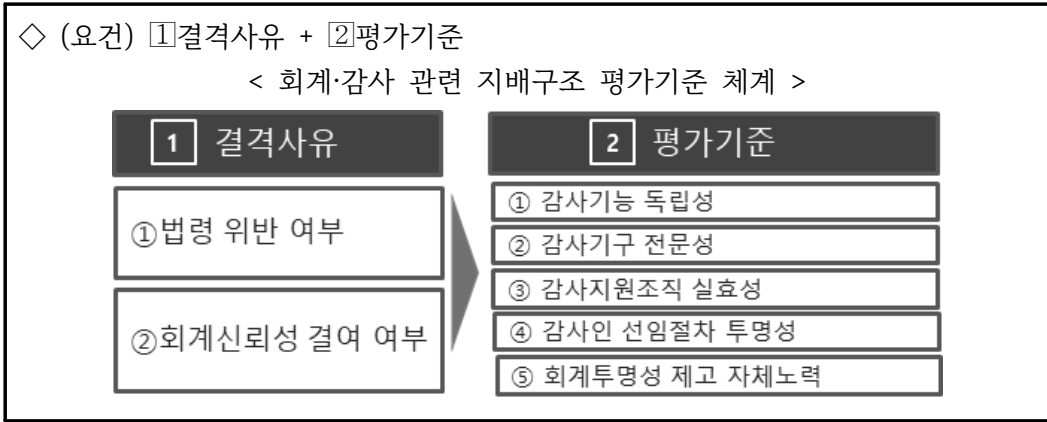
####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 >



### □ (유예적용) 유예대상 회사는 유예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1회 한정) → 이후에는 감사인 지정

-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 준수 필요 → 미충족시 즉각 유예 취소

### 평가기준



#### 1 결격사유

① (법령 위반) 과거 3년 내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등 위반을 이유로 회사의 횡령·배임혐의 공시※, 회사·임직원에게 대한 행정 처 제재처분, 검찰기소 등이 발생한 경우

※ 거래소 공시기준  
 ○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공소제기) 또는 사실로 확인(법원판결)된 때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 필요  
 ○ 임원은 금액과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고, 직원은 자기자본의 5%[(코스피) 자산 2조 이상 회사 2.5% (코스닥) 자산 2천억 이상 회사 3%] 이상 공시

- (예외) 신청 이전에 무죄·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제외  
 \* 금융위, 증선위, 금감원장, 한공회 등이 경고·주의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

② (회계신뢰성 결여) 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①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②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③신청시점에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  
 \* 법령상 의무에 따른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또는 검토

\*\* 회계오류에 대한 재작성과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수치를 수정한 경우 포함  
 - (예외)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재작성 금액이 중요성 금액\* 미만인 경우 등 경미한 경우 제외  
 \* 예) 자산·매출 평균의 1%

## 2 평가기준

\* 추후 평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변경 가능

□ 회계·감사와 관련한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

- [5대 분야] ①감사기능 독립성, ②감사기구 전문성, ③감사조직 실효성, ④감사인선임절차 투명성, ⑤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 [17대 항목] 평가분야별로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우수성,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 세부항목

### [평가항목 설계 원칙]

- ① 기업 지배구조 개선유인 제고를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 명확화
- ②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고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③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되, 자체 개선노력 반영
- ④ 즉시시행이 어려운 경우, 정관내규 반영 등 구속력있는 방법 인정  
➔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획득시 지정유예

### <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감사기능 독립성 (300)	1) 내부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1인 분리선출 100점, 2인 이상 200점	200
	2) 내부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50
	3) 외부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
감사기구 전문성 (200)	4)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0
	5)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	50
	6)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	100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250)	7) 감사 전담지원조직 규모(상대평가)	50
	8) 전담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상대평가)	40
	9)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40
	10)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40
	11) 감사위의 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협의)권	80
감사인선임절차 투명성 (150)	12) 감사인 선임·공모절차 투명성	100
	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100)	15)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정성 평가)	100
[가점] 외부 표창(+50)	16)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평가 및 표창	(최대 50)
[감점] 사회적 물의(-50)	17)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
합 계		1,000 (최대 1,050)

① (독립성: 300점) 내부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및

외부감사업무와 감사인 선임의 분리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감사인 선임과 회계감사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
- ※ 지배구조 모범규준(ESG기준원, '21.8월) : 감사위원 중 과반수 분리선출 권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ESG기준원, '18.5월) :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구성 권고
- ※ KOSPI 200 기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23년) : (1인) 192개사, (2인 이상\*) 8개사
- \* 정관에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2인 이상 분리선출한 경우 포함

※ KOSPI 200 기준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인 기업의 비중: 97.1%

(평가1)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에 따라 1인 100점, 2인 이상 200점

- 감사위원 임기 등으로 실제 분리선출하지 않더라도 정관변경 등을 완료한 경우에 점수 부여
- ※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 의무(2인 이상 분리선출을 위해서는 정관 기재 필요)

(평가2)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시 50점

- 법상 의무(2/3이상)보다는 많으나 전원은 아닌 경우 50점의 1/2인 25점 부여(예, 5인 감사위원회로, 사외이사가 4명인 경우)
- ※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2/3이상 의무

(평가3)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외부감사인 선임 완료시 50점

- ※ (감사인 선임기한)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대상 사업연도 개시 이전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대상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② (전문성: 200점)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 참여수준**

- 회계부정 사전 적발·예방을 위해 감사위원회 전문성 확보 필요
  -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ESG기준원)
-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2인 이상 포함
- (감사위원) 회계기준·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재무제표 관련 충분한 지식·경험
- (위원장) 상당한 수준의 회계·재무 지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역량

※ 美 SEC의 내부통제기준(SOX, Sarbanes-Oxley Act)상 감사위원 전문성 기준

☞ 미국 SEC는 아래의 사항을 재무전문가(Audit Committee Financial Expert)의 요건으로 제시 (section 407)

- ①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이해, ② 회계추정, 총당금·준비금 등 적용·평가 능력
- ③ 회사와 비교할만한 수준·난이도의 재무제표 작성·감사·분석·평가·감독 경험
- ④ 재무보고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이해, ⑤ 감사위원회 기능 이해 등

※ KOSPI 200 기준 회계·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 수('23년): 1.4인(41.2%)

(회계·재무전문가 외에 학계 21.7%, 법률전문가 17.4%, 재계 9.4%, 관료 5.2% 등 順)

〈 '회계재무전문가'의 상법상 요건별 실제 선임 현황(KOSPI 200 기준) 〉

회계·재무 전문가 유형	① 회계사 5년 ↑	② 회계·재무 석사 ↑ & 조교수 ↑, 5년 ↑	③ 상장사 회계·재무경력 임원 5년 ↑/직원 10년 ↑	④ 금융기관·정부 등 경력 5년 ↑
수(비중)	62명(23.9%)	95명(36.7%)	13명(5%)	89명(34.4%)

(평가4) 회계·재무전문가 2인 이상 둔 경우 50점

(평가5) 회계전문가를 1인 이상 둔 경우 추가점수 50점

(평가6) 감사위원장이 회계전문가인 경우 100점

※ 현재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 의무

**③ (지원의 실효성: 250점) 전담 지원조직의 규모 및 전문성·독립성**

- 비상근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전담

지원조직\*이 전문적·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

- \*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을 업무로 하면서,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부서로,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특성·업무분장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 판단
-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ESG기준원)은 ①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원급, ②내부감사부서의 적절한 수 및 전문성 확보, ③감사위원회의 책임자 임면동의·평가권 보유 권고
- ※ KOSPI 200社 중 내부감사부서 설치 회사는 167개(다만, 명칭·역할·기능·업무범위 등은 일률적이지 않음)

(평가7) 임직원 현원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50점

< 전담지원조직 규모별 점수(상대평가\* 기준) >

신청회사 중	상위 20%	상위 40%	상위 60%	그 외	전담부서 X
점수	50	40	30	20	0

- \* 신청상황을 보아가며 배점조정 및 절대평가 전환 검토
- ※ 감사연구원은 '과감인원 대비 적정감사인원 비율'로 최소 0.8% 제시(자체감사기구 운영표준모델, '10.9월)

(평가8) 전담지원조직 구성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40점

\* “회사 내 근무연수 + 타 회사 포함 회계업무 경력 × 2” 로 계산

< 전담지원조직 구성원의 근무연수별 점수(상대평가\* 기준) >

신청회사 중	상위 20%	상위 40%	상위 60%	그 외	전담부서 X
점수	40	30	20	10	0

\* 신청상황을 보아가며 배점조정 및 절대평가 전환 검토

(평가9)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등)가 근무하는 경우 1인당 20점(③~⑤는 10점 등)씩 최대 40점

\* ①한국공인회계사 자격 ②회계학박사 ③회계학석사&상장사·금융사 경력 3년 이상 ④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 ⑤그 외 회계 전문 자격증(난이도를 고려해 평가위 판단)

(평가10)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이 임원급(비등기임원 포함)인 경우 40점

(평가11)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에 대한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여부에 따라 최대 80점

- \* 부서장 또는 구성원 한쪽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거나, 평가 또는 임면 중 하나에 대해서만 있는 경우 각각 1/2씩 적용(예, 부서장에 대한 평가동의권만 있으면 20점)
- ※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 임면동의권을 보유한 회사는 KOSPI 200 기준 55개사(33.3%)

#### ④ (감사인 선임절차: 150점) 감사인 선임시 감사품질 우선 고려

-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 촉진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
- ①회사가 감사인 선임시 감사인을 개별접촉해 제안요청하는 경우, 객관적 선임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 ②감사인 선임시 평가항목중 가격지표 비중을 표준예시\*보다 높이는 경우, ‘감사품질’보다는 지나친 ‘감사보수’ 경쟁 발생
  - \*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표준예시(상장협 규정)상 가격지표 비중: 10%
  - ※ 상장사 감사보수/매출액(% , ‘21년) : (한국) 0.17 (미국) 0.44 (캐나다) 0.33 (유럽) 0.15

(평가12) 회사가 공모(2주이상 공고 필요)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서 감사보수 정보(①또는 ② 방법)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

- ① 회사 추정 감사투입시간·감사보수(하한·상한·기준치 모두 가능)를 감사위원회 보고를 거쳐 제시한 경우 100점 부여

※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시간, 감사투입인력 사항 문서화 필요(외감법 §10⑤)

- ② 최근 3년간 예정·실제 감사 투입시간 및 감사보수, 향후 감사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감사 위원회 보고를 거쳐 기재한 경우 60점 부여

\* (예) 회계시스템 교체로 IT 감사시간 증가 예상, 연결 내부회계 조기도입

(평가13) 감사인 선임평가지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중 x 2 배만큼 감점(최대 50점)

\* (예) 가격지표 비중이 30%인 경우 초과비중이 20% → 40점 감점

(평가14) 회사(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할 경우 감점

(기본점수 50점 일괄 부과 후 50점 범위 내에서 감점)

\* 회사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가 정성평가하여 점수 부여

- ※ 유예신청까지 선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회사내규 반영 입증시 적용 가능
  - 지정유예 적용시점에 그간 감사인 선임결과 입증자료 금감원 제출 필요
  - 유예신청 당시 충족된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유예 취소

#### ⑤ (자체노력: 100점) 기타 회계투명성 확보 노력(정성평가)

- 상기 평가항목 외에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회계시스템 고도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별 회사의 노력·성과를

###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15) 정량화는 어렵지만 회사의 특성에 맞춰 추진한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인적·물적 투자 등 일체)을 정성 평가

- ※ (예) 감사위원 임기보장, 회사관계자 참여 없이 감사위원회 또는 사외이사간 안전심의 기회 보장,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정기 교육 등
- 다만, 외부감사법에 따라 차등적·순차적으로 도입한 제도 관련 아래(①~③) 자체노력 사항은 명시적 반영 (총 100점)

\*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량적 점수 부여

- ①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감사위원 1인 이상 분리 선출시 추가 가점 (30점)
  - \*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분리선출 의무가 없으므로 '독립성' 분야 점수부여에 더하여 '자체노력'에 대한 가점부여
- ②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30점)
  - \* 자산 1천억 미만은 외부감사 의무는 없음 ('검토'만 의무)
- ③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외부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30점)
  - \*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5년 유예('23.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
  - (자산 5천억~2조원 회사: '24 → '29, 자산 5천억 미만 회사: '25 → '30)

※ 평가 15의 합계는 ①~③을 합하여 "⑤ 자체노력"에 배정된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추가 가점·감점 사항

#### 1) (가점 : 50점)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표창

(평가16) 회사 및 소속 임직원이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표창을 받은 경우 점수 부여(합산 최대 50점)

- ① (거래소 밸류업 우수표창) 최근 3년내 표창을 받은 경우 정부기관장 표창 이상 50점, 그 외 표창 30점
- ② (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 최근 3년내 A등급 이상을 유지하면서, S(A+) 등급을 1회 이상 획득한 경우\* : 50점(30점)
  - \* ('24년 기준) [S등급] 0개, [A+등급] 일반회사 11개, 금융회사 2개
- ③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최근 3년내 표창을 받은 경우 정부기관장 표창 이상 30점, 그 외 표창 15점
  - \* ESG기준원의 지배구조·주주친화경영 평가결과 500점 반영(총 2,700점 만점)
  - [정부기관장표창 이상] 3 (총리, 금융위, 중기부) [그 외] 11 (금감원 1, 거래소 3, 코협 7)
- ④ (회계의날) 최근 3년내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계의날 표창 수상시 정부기관장 표창 이상 20점

※ 이 외의 포상·표창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포상의 평가요소나 성격·훈격 등을 기초로 가점 부여 여부 및 수준 판단

㉞ (예외)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분식 등 우려가 큰 경우 가점 적용 제외

- ①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감리착수 개선성이 높은 경우(금감원)
- ② '지배구조'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가 하위 50%에 해당한 경우

## 2) (감점 : 50점) 회계투명성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평가17) 평가위원회가 회계투명성·지배구조와 관련한 회사의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점 범위 내에서 차감 가능

\* (예) 횡령·배임이 발생하였으나 횡령·배임 금액이 거래소 공시기준에 미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평가시 감점 고려

### 붙임 2 - 평가 적용사례

평가분야	A사 (자산 2조 이상)		B사 (자산 1천억~2조)		C사 (자산 1천억~2조)	
①독립성 (300)	분리선출 1인 (100) 전원 사외이사(50) 감사계약 조기체결 (50)[의무]	200	분리선출 2인 (200) 전원 사외이사(50) 감사계약 조기 체결 X (0)	250	분리선출 1인 (100) 전원 사외이사(50) 감사계약 조기체결 (50)	200
②구성의 전문성 (200)	회계재무 2인(50) 회계 1인(50) 위원장(100)	200	회계재무 1인(0) 회계 1인(50) 위원장(100)	150	회계재무 2인(50) 회계 1인(50) 위원장(100)	200
③지원조직 규모·권한 (250)	규모 ~20%(50) 경력 ~20%(40) CPA 2인(40) 부서장-임원(40) 동의권(80)	250	규모 ~40%(40) 경력 ~40%(30) CPA 2인(40) 부서장-임원(40) 동의권(80)	230	규모 ~40%(40) 경력 ~40%(30) CPA 1인(20) 부서장-임원(40) 동의권(80)	210
④감사인 선임(150)	공개입찰(100) 가격지표 10%(0) 체결 △0%(50)	150	공개입찰(100) 가격지표 10%(0) 체결 △5%(예, 40)	140	공개입찰(100) 가격지표 10%(0) 체결 △0%(50)	150
⑤자체노력 (100)	정성평가(50)	50	정성평가(50)	50	정성평가(50)	50
추가	가점	-	-	-	-	-
	감점	-	-	-	-	-
합계	850		820		810	
결과	합격		합격		합격	

**참고 1 - 상장사의 내부감사기구 설치 현황**

※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 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 ② (자산 1천억~2조원 상장사) 상근감사 설치가 원칙이나, 감사위원회\* 설치로 갈음가능
- ③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비상근감사 가능하나, 감사위원회 설치도 선택 가능

\* 자산 2조 이상 상장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요건(분리선출, 회계·재무전문가 등) 모두 만족 필요

〈 규모별 내부감사기구 설치 현황 〉

	자산총액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합계
코스피	자산 2조 이상	193	1*	-	194
	1천억~2조	263	291	-	554
	1천억 미만	9	21	31	61
	소계	465	313	31	809
코스닥	자산 2조 이상	6	-	-	6
	1천억~2조	212	633	-	845
	1천억 미만	66	-	661	727
	소계	284	633	661	1,578
합계	자산 2조 이상	199	1*	-	200
	1천억~2조	475	924	-	1,399
	1천억 미만	75	21	692	788
	소계	749	946	692	2,387

출처: '24.4.1일 기준\*\*, 상장협 및 코스닥협 조사\*\*\*

\* 설립근거법률에 따른 상근감사 의무화

\*\* 2023 사업보고서 기준이나, '23년말 자산총액 변경으로 적용제도가 달라진 경우는 달라진 기준에 따라 반영함

(예, '23년까지는 2조 미만 상장사로 상근감사를 선임해왔으나, '23년말 자산 2조원 이상이 되어 '24년 주총을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을 선임한 경우 감사위원회설치회사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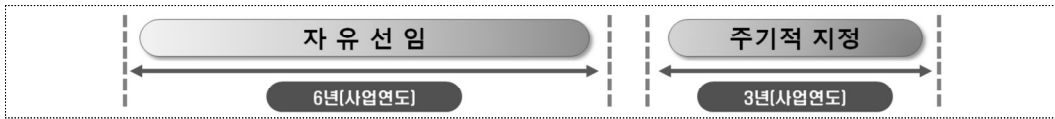
\*\*\* SPAC, KDR 방식으로 상장된 외국회사 등 약 120여개사 제외

## 참고 2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개요

□ (주기적 지정대상)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 이상(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1천억원)인 비상장회사로서 & ②지배주주·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 & ③ 지배주주·특수관계자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자유선임한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 지정(다만, 주기적 지정대상회사 쏠림 방지를 위해 분산지정 가능)



### 근거법률 : 외부감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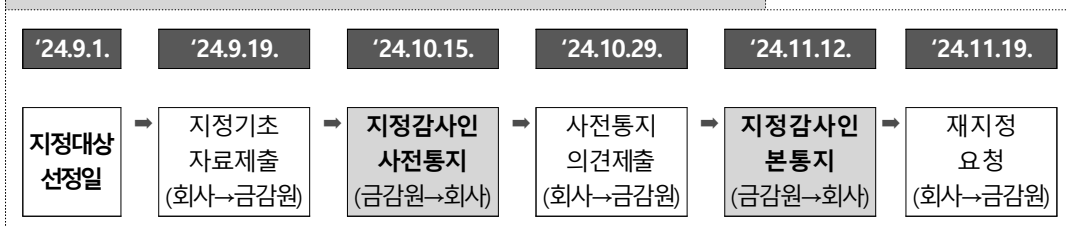
□ (§11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 (지정방법) 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 지정

□ (지정시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지정결과에 대해 10월 15일경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 본통지

###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4년 지정 일정



**참고 3 - 감사인 지정 현황('23년말 기준)**

□ (개요) 지정 회사는 1,667사로 전년(1,976사) 대비 309사 감소\*(15.6%↓)

\* 대형 비상장사 기준(자산 1천억 → 5천억원) 상향(△92사), 재무기준 지정 사유 합리화(△177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 폐지(△6사)에 주로 기인

○ 상장회사 지정 비율은 37.6%로 주기적 지정 시행 초기 수준('19년 34.7%)까지 하락

※ 연도별 상장사 감사인 지정 비율

(단위: 사, %, %p)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a)	'23년(b)	증감(b-a)
지정회사(A)	284	807	1,060	1,256	1,152	994	△158
주기적지정	-	220	434	593	531	517	△14
직권 지정	284	587	626	663	621	477	△144
전체 상장사(B)	2,230	2,326	2,382	2,457	2,542	2,642	100
지정비율(A/B)	12.7	34.7	44.5	51.1	45.3	37.6	△7.7

□ (지정사유별) 주기적 지정은 571사, 직권 지정은 1,096사

○ 직권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66사로 가장 많고, 재무기준 169사, 관리종목 148사, 감사인 미선임 88사 등 順

〈지정사유별 감사인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사유	지정연도	'22년(a)	'23년(b)	증감(c=b-a)	증감률(c/a)
주기적 지정		677	571	△106	△15.7
직권 지정	상장예정법인	460	466	+6	+1.3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 등)	346	169	△177	△51.2
	관리종목	130	148	+18	+13.8
	감사인미선임	121	88	△33	△27.3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52	60	+8	+15.4
	감리조치	40	40	-	-
	회사요청	36	46	+10	+27.8
	선임절차 위반	71	34	△37	△52.1
	횡령·배임 발생	17	19	+2	+11.8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8	10	+2	+25.0
	기타	18	16	△2	△11.1
	소 계	1,299	1,096	△203	△15.6
	합 계		1,976	1,667	△309